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6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월세 거주,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혜 중인 자, '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 사업(은평, 광진 등)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은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o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최대 12개월/240만원) ※ 생애 1회
 -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천원 단위 절사) 예시) 차임(월세) 108,000원은 월 10만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후 12개월간 지급

□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 2025. 6. 11.(수) 10:00 ~ 6. 24.(화) 18:00 (마감)

ㅇ 선정인원: 15,000명

ㅇ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 선정 및 지급

o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ㅇ 지급방법 : 격월 25일 전후로 계좌 입금

- 지급일정 : 10월(7월, 8월, 9월), 12월(10월, 11월분) 지급 이후,

잔여 7개월분은 '26년에 격월 지급 예정 (※ 지급일정 변동 가능)

※ 자세한 지급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참고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유지 여부 확인(심사) 후 지급

2. 신청 자격요건

□ 자격 요건

- o (가구) 주민등록상 신청인 1인만 등록되어 있는 무주택자 청년 1인 가구
 -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의 경우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면 신청 가능
- ㅇ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u>임차인</u> <u>본인이 신청</u>해야 함
 -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o (연령) 19세~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5. 1. 1. ~ 2006. 12. 31.)
- ㅇ (거주)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
 - ※ 단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면서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3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4.12.기준)은 5.0% 적용
 - *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 = 보증금 금액 × 5.0% ÷ 12개월
 - 예시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2만원으로 신청 가능
 -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2만원(3천만원 × 5.0% ÷ 12개월) + 월세 80만원
 - 예시2) 보증금 4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6만원으로 신청 불가
 -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6만원(4천만원 × 5.0% ÷ 12개월) + 월세 80만원
 - ※ 천원 단위는 절사함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가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 (※ 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경우, 임차보증금·월세액을 1인당 분담액 기준으로 인정
 -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1억 2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6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함
 -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이 동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두 심사 탈락)
- ㅇ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5년 3월~5월) 평균액)이 '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u>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u>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 재외국민 중 6개월 미만 국내 체류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여 해당 기간('25년 3월 ~ 5월) 내 보험료 부과 내역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
 -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예시1)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가구원수 1인)로 부과

- ⇒ 신청인의 '25년 3월~5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이 127,230원 이하이면 요건 충족예시2)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이며 부양자의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가구원수 3인)로 부과
- ⇒ 부양자의 '25년 3월~5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이 271,459원 이하이면 요건 충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2025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단위 : 원)

 기준	기구이스	ᇫᆮᄀᇫ	건강보험료 부과액			
중위소득	가구원수	소 득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871,000	102,613	22,380	_	
	2인	4,720,000	168,410	105,787	170,193	
	3인	6,031,000	215,933	151,146	219,196	
	4인	7,318,000	261,360	208,471	266,302	
120%	5인	8,530,000	302,462	260,307	311,031	
이하	6인	9,678,000	354,964	320,449	369,517	
	7인	10,787,000	386,684	357,963	407,092	
	8인	11,895,000	431,294	411,250	461,699	
	9인	13,003,000	461,699	447,279	506,004	
	10인	14,112,000	506,004	496,008	552,230	
	1인	3,589,000	127,230	58,386	_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150%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이하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9인	16,254,000	599,810	591,277	673,463	
	10인	17,639,000	673,463	654,281	792,926	

- ※ 출처 : 보건복지부(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http://www.nhis.or.kr)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 문의☎1577-1000
 -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보험료납부확인서'

◆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 ㅇ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혜 중인 사람
 - ※ 신청일 전 지원 종료 시 신청 가능
- ㅇ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O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 소유 등 포함)
 - ※ 주택 청약 시 적용되는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과 관계없이 소유권 확인될 시 선정 불가
- o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o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O (신청자 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O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 사업 (은평, 광진 등)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자립준비청년 월세·기숙사비 지원 등 유사 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
 - ※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타 사업 수급 등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O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ㅇ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ㅇ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o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ㅇ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아래 ① ~ ③ 중 하나 제출
 -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신고필증이 아님)
 -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아래 ①, ② 모두 제출
 - ① 입실확인서
 -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3) 전대차 계약인 경우 아래 ①, ②, ③ 모두 제출
 - ① 전대차 계약서
 - ※ (전대차 계약사항) 전대인과 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②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
 - ③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 ※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
- ㅇ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5.3~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
 -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 ▶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분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다운로드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o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4. 지원대상 선정 기준

ㅇ 선정인원 : 15,000명

o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액으로 함 (관리비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0%) 합산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 득 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6,750명 (45%) 4,500명 (3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2,250명 (15%)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1,500명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월세전환액(환산율 5.0%) 및 월세액 합계 93만원 이하	이하	(10%)

5. 심사결과 발표

ㅇ 일시: 2025년 8월 예정

o 발표: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이하'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알림

6. 이의신청

ㅇ 대상자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

-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및 필요시 소명자료(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통보 ('마이페이지'게재 및 개별 알림)한 날부터 10일 이내(1회만 신청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7. 최종 선정결과 발표

ㅇ 일시: 2025년 9월 초 예정

o 발표: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 o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입금 전용계좌(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 ※ 청년드림통장을 개설기간 내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 추후 안내)
 - ※ 청년드림통장 기 보유자는 정상 거래 가능한지 신한은행에서 확인 필요 (사용할 수 없는 계좌일 경우 선정 취소됨)

8. 선정자 의무사항

- ㅇ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 등록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서울시외 타 지역 전출 후 서울시 재전입해도 동일함)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 합가,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주소지로 전입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시 청년수당,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 자립준비청년 월세·기숙사비 지원 등 유사 사업 동시 참여
 - 주택 구매, 전세 거주 등 월세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
 -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급 중지됨
- ㅇ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등록
 - ※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어 변경신고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월은 종전 계약 내용대로 지급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 내용은 익월부터 적용

9. 기타 유의사항

- 사업신청, 접수, 이의신청, 변경 및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ㅇ 신청 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어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됩니다.

- o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됩니다.
-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내 자주하는 질문(FAQ)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화 문의 폭주로 인한 상담 지연 및 장애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사업 공고일부터 접수 마감일 까지 주민등록 생년월일 끝자리 번호 기준 2부제(생년월일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는 짝수일) 문의를 가급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지원센터에서는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콜센터(☎1833-2030) 등을 통하여 상담 시행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정확한 정보(자료) 없이 신청자 질의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니, 신청 접수와 관련한 전화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관련하여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 주거포털 공지 사항에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바랍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추진절차 >

신청·접수 (6월)	₽	자격심사 (6월~8월)		심사결과 통보 (8월)	₽	최종선정자 발표 (9월 초)	₽	지원금 지급 (10월 말)
서울주거포털 '청년 월세 지원'		서류심사 (재산조회 등), 중복지원 여부	⇒	심사통과자 통보 / 이의 신청 접수		최종 심사통과자 전산 추첨		선정자 계좌 개설에 따른 지급 (미개설 시 지급 불가)
	•					* 세부일정은 사정	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